

인천지방법원 2020. 3. 10 선고 2019가단2667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. 12. 12. 접수 제21161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남해인

별지